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(백혜련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14592

발의연월일: 2022. 1. 27.

발 의 자:백혜련·김회재·이형석

천준호・이동주・윤관석

박영순 · 김영호 · 김병기

오영환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 법령에서는 공공기관이 5만명 이상의 안면 등 민감정보나 100만명 이상의 개인정보를 포함한 데이터를 구축·운영 및 변경하려면 관련 법률의 준수 및 사생활 침해 여부 등을 살피는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받도록 정하고 있음.

그러나 현행 법령에서는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받도록 의무를 부과 하고는 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별도의 제재 근거가 없는 상 황으로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는 공공기관에 대한 강제수 단이 없는 상황임.

이에 동 개정안은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거나 그 결과를 보호위원회에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 는 규정을 신설하여 개인정보 보호의 사각지대를 없애려는 것임(안 제 75조제2항제7호의4 신설). 법률 제 호

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개인정보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5조제2항에 제7호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7의4. 제33조를 위반하여 영향평가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결과를 보호위원회에 제출하지 아니한 자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75조(과태료) ① (생 략)	제75조(과태료) ① (현행과 같음)
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	②
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	
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	
1. ~ 7의3. (생 략)	1. ~ 7의3. (현행과 같음)
<u> <신 설></u>	7의4. 제33조를 위반하여 영향
	평가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
	결과를 보호위원회에 제출하
	<u>지 아니한 자</u>
8. ~ 13. (생 략)	8. ~ 13. (현행과 같음)
③ ~ ⑤ (생 략)	③ ~ ⑤ (현행과 같음)